

2004.4.26(월) 10:00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김 제 시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04 -10
--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3.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개정이유

○ 리·통장의 임기가 변동(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)됨에 따라 리·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·통장자녀장학생 선발 자격기준(현행2년이상)을 완화하고, '04 중학교의무교육시행으로 김제시리·통장자녀장학금 중학생 선발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김제시리·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리·통장으로 “2년이상 근속한 자”에서 “1년이상 근속한 자”로 개정(제3조제3항)
○ ‘04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학생 선발자격요건 삭제
(안 제3조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, 제8조 “중·고등학생”를
“고등학생”으로 개정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

- 김제시리·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
- 김제시장학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

나. 기 타 : 입법예고(2004. 2. 20 - 3.11) - 특이사항없음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2년이상 근속한 자의 중·고등학생 자녀”를
“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자녀”로 한다

제5조제2항중 “중학생·고등학생·대학생”을 “고등학생·대학생”으로 한다

제7조 및 제8조중 “중·고등학생”을 “고등학생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</p> <p>①~②(생략) ③이·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은 <u>이·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</u> <u>의 중·고등학생 자녀로서</u> 학업성적이 미 평점 또는 50점 이상이거나 예능·기능·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한다 ④~⑤(생략)</p>	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<u>이·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</u> <u>의 고등학생 자녀로서-----</u> -----70점 ----- ----- ④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선발)</p> <p>①(생략) ②일반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<u>그 배정비율은 중학생·고등학생</u> <u>·대학생별 당해연도의 신청자수</u>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배정한다. 다만 이·통장자녀 장학금 및 특별장학금 장학생 신청자는 제외한다 ③(생략)</p>	<p>제5조(선발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고등학생</u> <u>·대학생별-----</u> 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7조(장학금액) 중 · 고등학생에게</u></p> <p>지급하는 장학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 수당액 수준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50만원 으로 한다 다만, 예산의 범위안 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</p>	<p><u>제7조(장학금액) 고등학생에게</u>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8조(장학금의 지급)</u> 장학금은 선발된 당해 학년동안만 지급하되 <u>중 · 고등학생에게는</u> 분기별로 대학생에게는 학기별로 학교장.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</p>	<p><u>제8조(장학금의 지급)</u></p> <p>----- ----- <u>고등학생에게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